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12월 1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12월 1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안전국장 송오섭)

- 가. 제안이유
 - 포상휴가 최대 부여일수 확대, 생일특별휴가 근거 마련 및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확대 등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직원 복리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부여기간 확대(안 제15조제3항)
 -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(안 제15조제4항)
 - 특별휴가 중 생일특별휴가 부여 근거마련(안 제15조제8항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 제1항에 따르면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해당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
-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, 장기재직휴가, 생일휴가와 관련하여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어 우리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며
- 고유업무 외에도 코로나19, 풍수해 등 각종 비상대응 및 기타 업무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노고를 적절히 보상하고 긴 휴식을 통해 장기근무로 인한 피로감 해소 및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특별휴가 확대·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